

부산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합527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유재준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경은, 김상수

**변론 종결**2022. 11. 9.

**판결 선고**2022. 12. 21.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57,84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금원을, 예비적으로 82,64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각 양립 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에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각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붙인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되어, 이주자로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인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21. 9.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각 상속비율에 따라 1/2씩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6. 피고 B이 1/2 지분을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중 피고 B 소유 지분과 피고 C가 소유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각 122,5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771, 이하 피고 B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2022. 8. 25. 원고의 가압류 일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에 따라 말소되었다.

마. 피고 B은 2022. 8. 24.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금계좌로 122,500,000원을, 2022. 9. 26. 같은 계좌로 122,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2. 10. 11. 피고 B에게 위 돈 중 122,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 C는 2022. 10. 17.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12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 가. 주위적 청구(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 피고들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87,397원, 각종 소송비용의 합계 11,828,300원을 더한 272,615,697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122,5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그 즉시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인 150,115,697원(= 272,615,697원 - 12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2022. 8. 24. 원고 소송대리인의 예금계좌로 12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22. 9. 19.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잔금 150,115,69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150,115,697원(각 75,057,8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의 지급일(피고 B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245,000,000원인데, 피고들은 2022. 8. 24. 원고에게 1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45,000,000원에 대한 201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22. 2.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6,849,315원[= 245,000,000원 × (2년 + 70/365일) × 5%], 그다음 날부터 피고들의 위 122,500,000원 일부 변제일인 2022. 8. 2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5,948,493원(= 245,000,000원 × 12% × 198/365일)이다. 이를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잔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65,297,808원(= 245,000,000원 +

26,849,315원 + 15,948,493원 - 122,5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65,297,808원(각 82,64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 갑 제6, 7, 10,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인 김상수 변호사는 2022. 8. 17. 원고 소송대리인인 G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위 금액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어떠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 B 외 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반환금액

○ 총합 272,615,697원

1) 청구금액: 245,000,000원

2) 이자 15,787,397원

-2022. 2. 4.(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2. 8. 18.까지 총 196일

-연 12%

3) 소송비용: 11,828,300원

-인지액 931,500원

-송달료 5,200원 × 9회 = 46,800원(피고들 각 2회, 사실조회신청 5회 발송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상세한 금액은 불명확)

-변호보수 10,850,000원

|                                       |    |
|---------------------------------------|----|
|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 1% |
| [1,0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원) × 1/100] |    |

2) 이후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직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             |                                                                                                                                                             |      |
|--------------|-------------|-------------------------------------------------------------------------------------------------------------------------------------------------------------|------|
| 2022. 8. 22. | 원고<br>소송대리인 | B은 오늘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압류해제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한 직원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갑6   |
| 2022. 9. 1.  | 직원          | 대출신청을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금액 입금할 예정입니다.                                                                                                             | 갑11  |
| 2022. 9. 22. | 원고<br>소송대리인 | 저희 의뢰인께서 이자를 최대한 줄여주지 않는다면 제게 문제를 삼겠다고 하시네요.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고 은행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다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고리의 사채를 빌려다가 돈을 갚고 가압류를 풀게 되었으니 본인도 이자를 더 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 | 을2-1 |

3) 원고는 2022. 8. 24.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위 접수증명원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감사하다고 답변하였다.

4) 피고 B은 2022. 9. 19.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송대리인과 작성한 소송위임장에는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가 수권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122,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다음,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위 2억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 ② 원고와 피고들은 각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외에서의 화해에 대한 권한도 수권하였기 때문에 각 소송대리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2022. 8. 1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을 제시하면서 '위 금액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어떠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피고들이 272,615,697원으로 합의하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문자메시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소송대리인들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2. 8. 22.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B은 오늘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압류해제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한 직원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거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압류 신청취하 접수통지서를 발송하자 감사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소송대리인들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B이 일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2. 9.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금액 입금할 예정입니다."고 하여 2022. 8. 24.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도 피고들의 청약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인다.

④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2. 9. 22.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고 은행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다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고리의 사채를 빌려다가 돈을 갚고 가압류를 풀게 되었으니 본인도 이자를 더 낼 수 없다고 하십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자를 감액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⑤ 피고들은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2022. 9. 22.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이자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만 있는 것으로 보아 2022. 9. 22.경에도 합의는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들은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더라도 해방공탁이나 변제공탁 등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었는데, 피고 B이 2022.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소송대리인이나 그 직원에게 발송한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대출신청을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금액 입금할 예정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고 은행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다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B이 2022. 8. 24.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122,500,000원을 지급한 후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피고 C 소유의 아파트에도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 B이 2022. 8. 24. 122,5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 B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⑦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 소송대리인이나 그 직원에게 발송한 '대출신청을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금액 입금할 예정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고 은행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다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종합하면, 당사자들은 부당이득금의 잔금 지급일을 피고 B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날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B의 부동산에 2022. 9. 19.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면서 대출이 실행되므로, 담보가 설정된 2022. 9. 19.을 피고 B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부당이득금의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다.

#### **다. 합의에 따른 피고들의 지급금액**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은 상속지분과 무관하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로 청약하고, 원고도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상속지분과 상관없이 2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787,397원, 각종 소송비용 11,828,300원을 더한 272,615,69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에게 12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150,115,697원(= 272,615,697원 - 12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 변제공탁의 효력**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원고를 위하여 122,5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은 150,115,697원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75,057,8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잔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 피고 B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형철**

**판사박광일**

**판사차민우**